

제341회 정례회
2015. 7. 14.(화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NGO센터 운영·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NGO센터 운영·관리 민간위탁 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5. 7. 14.(화)
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3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7월 3일

-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조운희)

1. 제안사유

○ 「충북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」에 의거 충청북도NGO센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NGO센터 위탁 추진계획

- 수탁기간 : 2015. 10. 1 ~ 2018. 9. 31(3년간)
 - ※ 現 수탁기관 (사)충북시민재단 / 2012.10.1.~2015.9.31.(3년간)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(운천동)
- 규 모 : 건물 1,143.41m²(BYC운천동건물 2층)
- 위 탁 비 : 연간 145백만원정도(인건비 95, 운영비 50)
- 위탁사무
 - NGO활동을 위한 회의, 교육, 정보검색 등 편의시설 운영
 - NGO의 창립, 자원봉사 안내 등 상담
 - NGO구성원의 소양교육, 활동가 육성 등 교육
 -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, 민간협력사업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
 - NGO의 균형발전 도모
 - 사회통합, 소통, 갈등예방 및 해결
 -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숙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
 - 기타 NGO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

○ 충청북도NGO센터 위탁 추진일정

- NGO센터 수탁기관 운영방침 수립 : 7월중
-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추진 : 7월중
- 수탁기관 심의·선정 : 8월중
-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9월중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충청북도 NGO센터는 2012년 10월 18일 개소를 하여 충북 시민 단체의 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하였음.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통합, 소통, 갈등예방을 위한 충청북도 NGO센터의 기능은 중요하다고 사료됨.
- 전문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NGO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. 다만 충청북도 NGO센터가 공공기관인 만큼 보다 공공성을 유지하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NGO센터 운영·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

충청북도NGO센터 운영·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9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6월 2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시민단체의 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하고, 시민단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NGO센터 운영 및 관리 등 제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“충청북도 NGO센터의 운영·관리 민간위탁 동의안”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골자

가. 민간위탁 대상 : 충청북도NGO센터 운영 및 관리

나. 위탁 주요시설

- 위치 :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(운천동)
- 면적 : 1,143.41㎡
- 공간내용 : 사무실, 상담실, 인큐베이터실, 휴게실, NGO도서관,
교육실, 회의실 등

※ 충청북도NGO센터 개소일 : 2012. 10. 18.

3. 관련법령 : 별첨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제3항(사무의 위임 등)
- 나. 「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위탁협약 체결)
- 다.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4. 민간위탁 내용

가. 충청북도NGO센터 시설현황

소재지	면적	주요시설	비고
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	1,143.41㎡	사무실, 상담실, 인큐베이터 실, NGO도서관, 교육실, 회의 실 등	

나. 민간위탁 대상사무 : 충청북도NGO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

다. 민간위탁 세부내용

- 수탁기관 :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 - ※ 現 수탁기관 (사)충북시민재단 / 2012.10.1.~2015.9.31.(3년간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(평가, 재위탁) 후 위·수탁협약에 의함
- 수탁기관선정 :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
- 위탁 주요사무
 - 충청북도NGO센터의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
 - NGO활동을 위한 회의, 교육, 정보검색 등 편의시설 운영
 - NGO의 창립, 자원봉사 안내 등 상담
 - NGO구성원의 소양교육, 활동가 육성 등 교육
 -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, 민간협력사업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
 - NGO의 균형발전 도모
 - 사회통합, 소통, 갈등예방 및 해결
 -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숙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
 - 기타 NGO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

관 계 법 령 발 취

【지방자치법】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【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5조(위탁협약 체결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(이하 “운영자”라 한다.)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 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여부는 위탁기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.

【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】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